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과잉진료 지양,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관련 설립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일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개선(안 제19조제2항)

- 1)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 및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함에 따라, 의료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타 분야에 비하여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2)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의료 협동조합 개선’ 과제 발표를 계기로, 의료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서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소규모 지역의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 수’를 500인에서 300인으로, ‘최소 출자금 납입총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함.
- 3) 설립인가 기준의 개선을 통해 의료 협동조합 신설이 활발해지고, 기준 미달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의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건물, 장비 매입을 통한 사업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한 위탁사항 추가(안 제32조)

- 1)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 전문성, 일관성이 요구됨에 따라 해당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음.
- 2) ‘정관변경,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 신고 또는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보완 요구’의 사항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규로 위탁하도록 함.
- 3) 협동조합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확인 및 보완 요구’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탁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검토 업무의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일 것”을 “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를 “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분할인가”를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 및 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인가(제2항제7호의5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확인”을 “확인 및 보완 요구”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및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5.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의 확인 및 보완 요구

제32조제2항제9호 중 “확인”을 “확인 및 보완 요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 가 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 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 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 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 일 것 2. ~ 3. (생 략)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 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 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 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생 략) ③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 부 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 가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 인 경우에 한정한다)·군에 개 설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 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 --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군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 5. (생략)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 1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 및 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5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 11.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5. (생략)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7.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확인
및 보완 요구-----

6의2.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 연합회의 합병신고 및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

<u><신 설></u>	<u>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 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 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의4.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 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의5.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u>확인</u>에 관한 사항	9. ----- ----- -----<u>확인 및 보완 요구</u>-----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연 락 처	(044) 215 - 5932